

보건실 운영 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보건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) 보건실 운영장소는 루터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교내에 둔다.

제3조(설립목적) 보건실은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1. 감염병에 대한 대응
2.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부터의 응급상황 대처
3. 그 외 보건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5조(조직구성)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둔다.

1. 보건실장(책임자) 1인
2. 운영위원(실장 포함) 5인
3. 보건 보조원(근로) 1인

제6조(역할) ① 보건실장은 보건실을 대표하고, 운영전반을 관리 감독한다. 보건실장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운영위원은 보건실의 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기구 역할을 한다. 운영위원은 실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교내의 전공 원, 재학생, 외부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 (2020.2.25.개정)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3 장 재 정

제7조(재원) 보건실의 관리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비예산
2.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

제8조(회계연도) 보건실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9조(예산과 결산) ① 보건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보건실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

5-15-1 보건실 운영 규정

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0조(규정 개정 등) ① 보건실의 규정 개정, 해산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보건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보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